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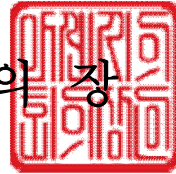
아산시의회 공고 제2024-8호

##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 및 「아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30일

아 산 시 의 회 의 장



## 1. 조례안 목록

조 례 안	발 의 의 원	비고
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대표발의> 이춘호 의원 <공동발의> 명노봉, 김은복, 김미성, 안정근, 윤원준, 천철호, 김미영, 홍성표, 맹의석, 김희영 의원	
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	<대표발의> 명노봉 의원 <공동발의> 김희영 의원	
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	이춘호 의원	
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대표발의> 홍성표 의원 <공동발의> 윤원준, 명노봉 의원	
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	<대표발의> 김은복 의원 <공동발의> 윤원준 의원	
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윤원준 의원	

※ 조례안 : 따로붙임 참조

## 2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제·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기한 : 2024년 6월 4일(화)까지

나. 의견 제출방법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 등
- 3) 서면, 우편, 전자우편(asansicouncil@korea.kr), 팩스(041-540-2135)로 제출
- 4) 의견 제출할 곳 : (우)31512/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)

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(☎ 041-540-2905, 2628, 2705, 270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[붙임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의견	비고